

대전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나1042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원

피고, 항소인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철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9.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2007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4,34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18.부터, 94,34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각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6면 제2행 ‘사실’ 뒤에 ‘(피고 A는 친구인 L의 추천으로 K의 이사로 취임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L가 K의 이사를 추천할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 ‘인척관계인 사실’ 뒤에 ‘, 이 사건 증여의 시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피고 B의 매수대금 간의 차이’를 추가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

별지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논산시 일야 563㎡
2. 충청남도 논산시 일야 376㎡
3. 충청남도 논산시 일야 15㎡, 팔.

